

의안번호	제 88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58 회)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발 의 자	강태원의원 외 13인
발의연월일	2007년 3월 6일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강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
----------	----

발의연월일 : 2007년 3월 6일

발 의 자 : 강태원·김환동·이필용·조영재

연만흠·이중호·김인수·민경환
이범윤·최미애·박영웅·장주식
이기동·박재국의원(14인)

제정이유

충청북도가 도민을 위하여 제공한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하던 목적과는 달리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으로 함(안 제4조).

나. 리콜 대상은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안 제5조제1항)

- (1)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
- (2) 각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 (3) 기타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단, 다음 사무들은 제외함(안 제5조제2항)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익의 구체절차가 규정된 사항
- (2) 도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보수 등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
- (4) 이 조례에 의한 리콜을 청구한 적이 있는 사항

다. 리콜의 청구는 200인 이상의 청구권자의 서명,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의무화함(안 제6조).

라. 리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리콜심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내지 제12조).

- (1) 구성 : 15인 이내(전문가 9, 도의원 3, 공무원 3인 이내)
- (2) 임기 : 2년(연임 가능)
- (3) 기능 : 리콜 청구 내용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주민을 위하여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행정서비스”라 함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중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 2. “리콜”은 일정 수의 주민의 청구에 의해 도지사가 당해 사업을 철회하거나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 의견수렴) 도지사가 주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리콜 청구권) ①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리콜 청구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②리콜 청구권자의 연령계산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리콜대상) ①리콜 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
- 2. 각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 3. 기타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리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익의 구제절차가 규정된 사항
2. 도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보수 등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 의한 리콜을 청구한 적이 있는 사항

제6조(리콜의 청구) ①리콜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청구권자 2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서명요청권이 있는 자는 대표자 및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로 하며, 서명요청기간은 제4항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대표자는 리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전항의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자 선정과 증명서 교부 및 공표, 서명 요청권 위임, 기타 청구절차와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구인서명부의 공람, 이의신청, 보정 등) ①도지사는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를 리콜청구서 사본과 함께 7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시켜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람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판명되어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④공람, 이의신청, 보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구의 각하) 도지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콜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제6조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리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제6조제3항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결하는 경우

제9조(심사 요청)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리콜의 청구를 접수한 후 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확인한 때에는 리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리콜심사위원회 구성) ①행정서비스 리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선출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인
3. 도 소속 공무원 3인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리콜 청구 내용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2.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리콜 여부의 결정)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리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第15條(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35條(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11(생략)

第58條(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분의 1 이상 또는 議員 10人 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改正 1989.12.30>

②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9.8.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議案은 그 案을 갖추어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5. 16)